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032

발의연월일: 2021. 8. 12.

발 의 자: 송석준 · 정찬민 · 지성호

박성민 · 하영제 · 김영식

이종배 · 엄태영 · 조태용

강대식 • 박 진 • 김예지

이만희 · 김미애 · 태영호

서정숙 · 정희용 · 김석기

김성원 · 서범수 · 조명희

최승재 • 이명수 • 이종성

추경호 · 양금희 · 백종헌

유주경 • 유경준 • 서일준

의원(3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,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.

현행법(시행령)은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(내화구조로 된 벽, 바닥, 방화문)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창고이거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하거나

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방화스크린(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도 방화스크린으로 대체)과 같은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열연기가 쉽게 이동하여 화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 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 도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도제한 등) ① (생 략)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· 위 생 및 방화(防火)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, 방화구획(防火區劃), 화장실의 구조, 계단·출입구, 거실의 반 자 높이, 거실의 채광・환기,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. <단서 신 ----.. 다만, 창고시 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 설> 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 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 다.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